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30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 개요	2
2. 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추가 등 (안태준의원안)	5

I. 개요

1.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6730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 개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¹⁾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감면특례 대상자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임. 이러한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는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2011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신설 당시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013년 말까지 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율은 50%로 하향 조정하였음.

이후 2015년 세법 개정으로 감면율을 70%로 다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간 150만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부터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 단절 여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8년 세법 개정시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90%로 상향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감면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23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년까지로 연장하였음. 또한 2024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대상자 중 ‘경력단절 여성’이,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되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 연혁]

구분	2011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년 개정	2024년 개정
적용대상	청년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 절 근로자
감면기간	취업후 3년간		취업 후 3년간 (청년은 5년간)				
감면율	100%	50%	70%		70%(청년 90%)		
감면한도	-		150만원			200만원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1조 1,38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1조 1,638억 원, 2026년에는 1조 2,26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연도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지출규모	8,397	9,667	9,609	11,384	11,638	12,26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감면율 상향 및 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추가(안태준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요건: <u>중소기업체</u> ○ 감면내용: <u>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u> ○ 감면한도: 200만원 ○ 적용기한: 2026. 12. 31.까지 취업	☐ <u>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추가</u> ○ (현행과 같음) ○ 요건 - <u>청년: 중소기업체 및 중견기업체</u> - 그 외: 현행과 같음 ○ 감면내용 - <u>청년: 취업일부터 7년간(중견기업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00%(중견기업은 90%) 감면</u> - 그 외: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안태준의원안 2026. 2. 11. 발의(의안번호 16730)

☐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제도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²⁾)에 취업한 청년

2) 현행 농업, 제조업 등 표준산업분류상 1,205개 중 1,037개 업종에만 적용 중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중견기업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까지 확대하며, 현행 취업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된 감면기간을 7년간(중견기업은 5년간)으로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을 역시 현행 90%에서 100%(중견기업은 90%)로 상향하려는 내용임.

- 현행 법령은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 규모 및 독립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비교]

구분	중소기업(조특령 §2)	중견기업(조특령 §6의4① / §9④)
분류	▶ (없음)	▶ 「조특법」 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성실 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아닐 것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성실 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닐 것
규모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하 * (예)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R&D 세액공제는 5천억원)
독립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 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② 관계회사간 매출액 합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11.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자산총액 11.6조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이상 법인이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자료: 재정경제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청년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의 취업 유인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청년고용동향 통계³⁾에 따르면, 2025년 청년 고용률은 45.0%로 생

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 69.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 또한 전체 실업률 2.8% 대비 6.1%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체 고용률은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청년 고용률 저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청년(15세~29세) 및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고용률	전체 ¹⁾	66.8	65.9	66.5	68.5	69.2	69.5	69.8
	청년	43.5	42.2	44.2	46.6	46.5	46.1	45.0
실업률	전체	3.8	4.0	3.7	2.9	2.7	2.8	2.8
	청년	8.9	9.0	7.8	6.4	5.9	5.9	6.1

주: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총인구, 고용률=취업자수/총인구,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주1: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임.

자료: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특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은 청년층의 취업 유인을 증가시켜 고용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중견기업의 주요 이직 원인 및 신규채용 애로사항에 대한 통

3) 본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통계청 청년고용동향 통계에서의 '청년'의 범위는 15~29세로서 일부 대상집단이 제외되는 차이가 있으나, 집단 간 비교로서의 의미 도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계를 고려할 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도 소득세 감면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중견기업 기본통계」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견기업의 주요 이직원인 중 ‘개인사정(51.3%)’을 제외하고는 ‘중견기업 스카우트(19.4%)’에 이어 ‘낮은 임금수준(10.1%)’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규채용 애로사항 역시 ‘적합한 인재 부재(49.7%)’에 이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열악(19.8%)’이 2순위를 차지하는 등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신규채용 저조 및 이직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취업 청년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중견기업의 높은 이직률 및 신규채용 애로사항 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소기업 중 업종에 따라 동 제도에 따른 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도 존재하는데, 이를 배제한 채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는 모든 중소

4) 2026.2.25. 기준, 국가통계포털(KOSIS)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총 23개 사업군⁵⁾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해당 사업군의 상대적인 소득수준 및 해당 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결정한 것임.⁶⁾

이처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6)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됨

둘째, 중견기업에까지 소득감면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청년 구직자 일자리 인식 조사」⁷⁾에 따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 64.3%, 중견기업은 36.0%인 반면 중소기업은 15.7%로,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경우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까지 소득세 감면특례를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청년을 제외한 중소기업 취업 세액공제 대상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청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중견기업 취업자의 경우 ‘청년’에 대하여만 특례를 부여할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넷째, 개정안은 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를 2026년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소득세 감면특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

7) 2023.5.25., 대한상공회의소

음.

개정안은 중견기업체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취업하는 경우로
감면 대상을 설정하면서 동 제도의 일몰규정(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2026년 1년간 중견
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됨. 동 개정안의
목적이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중견기업에 대한
취업 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2026년 1년간 취업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중견기업체에의 취업 유인 증진이라는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까지 확대하고 중
소기업 청년에 대한 감면을 및 감면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
수는 2027년 129억원, 2033년 140억원 등 7년간 총 1,527억원(연
평균 21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안태준 의원안	△129	△267	△276	△285	△294	△136	△140	△1,527	△218

문 의 처
02)6788-5157